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456호(號) 1928(昭和 3)년 7월 6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62호(號)

육군휙병품(陸軍恤兵品)은 하기[左記] 각(各) 호(號)에 의하여 취급(取扱)함이 가(可)함.  
1928(昭和 3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97호(號)는 이것을 폐지(廢止)함.

1928(昭和 3)년 7월 6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- 1 품 목(品 目) 육군휙병품(陸軍恤兵品)
- 2 급종별(扱種別) 소하물(小荷物)과 소화물급(小貨物扱) 및 차급(車扱) 화물(貨物). 단(但) 소하물(小荷物)은 배달(配達)의 취급(取扱)을 하지 아니함
- 3 운 임(運 賃)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무임(無賃)
- 4 발착역(發著驛)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, 연대철도(連帶鐵道) 및 항로(航路) 각(各) 역소(驛所)·항(港)
- 5 탁송자(託送者) 관공아(官公衙) 또는 기증인(寄贈人)
- 6 수하인(受荷人) 육군관아(陸軍官衙) 또는 부대(部隊)
- 7 조 건(條 件) 기증인이 탁송(託送)한 경우는 육군관아발행(陸軍官衙發行)의 육군휙병품인 것의 증명서(證明書)를 첨부(添附)할 것을 요(要)함.
- 8 기 일(期 日) 1928(昭和 3)년 7월 6일부터 당분간(當分間)